

이 광 석 선임연구원

GR은 아직 구체적인 실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과 무역의 문제를 다룰 일련의 다자간 국제협상을 의미한다.

환경과 무역이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야인듯 하나,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세계화되고 국제간 무역이 많아짐에 따라 환경과 무역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를 위해 무역규제 조치를 취한다든지, 각국간의 환경정책의 차이로 수출경쟁력에 차이가 나니 국제적인 룰이 있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GR은 이러한 환경보호 문제와 UR에서 이룩한 자유무역의 원칙을 조화시키자는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① GR의 근간이 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② 무역과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③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수단으로

GR의 배경 및 전망

공해없는 에너지와 資源사용 촉구

이 광 석

한국 원자력연구소 대외정책 연구실 선임연구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④ 환경과 무역문제에 대해 국제기구들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 본 뒤 앞으로 GR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I.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GR의 근간이 되는 것은 역시 환경문제이다.

과학기술의 발달, 각국의 고도 경제 성장, 화석연료의 사용 등 20세기는 인간에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연환경을 그에 상응하여 파괴한 기간이기도 했다.

1972년 로마클럽에 보고서로 출간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

wth)'는 경제 개발과 인구 증가로 인해 지구의 '수용능력'이 실제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등 지구적인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세기 후반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 환경 관련 주요 국제회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UNCHE : 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부터이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 아래 'UN 환경선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동서냉전 체제하의 이념 대립으로 별다른 진전이

<특집 I> : 「그린라운드」와 原子力

없다가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시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1983년 UN에 의해 설립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1987년 노르웨이 수상인 브룬트란트를 회장으로 하여 '우리들 모두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미래 세대의 욕구를 총족시키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도 만족시키는' 개발로 정의 하여 이 개념을 일반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는 1992년6월 UN 환경개발회의(UNCED :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본격화 되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손으로'라는 기치 아래 브라질 리우데자이네이로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는 향후 지구환경 보전의 기본원칙이 될 「리우宣言」과 세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행과제를 분야별로 명기한 「의제(Agenda 21)」이 채택되었다.

이후 「의제 21」을 실행하기 위한 「UN 지속개발위원회(UN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결성되어 1993년6월 「의제 21」 실행 상황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

립하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 주요 국제환경협약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가 논의되면서 大氣保全, 유해물질 규제, 동식물보호, 해양환경 보호, 자연자원 보전 등 의 분야에서 15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었다.

주요국제환경협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비엔나협약」은 오존층 파괴의 주원인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 할론(Halon) 등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하기 위하여 1985년 채택되어 1988년 9월 발효되었다.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정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7년 9월 채택되어 1989년1월 발효되었다. 이후 규제 일정을 단축하고 메틸클로로포름 등 규제물질을 확대한 런던 개정의정서가 1990년6월 채택되어 1992년8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1992년5월, 런던 개정의정서에는 1993년3월 가입하였다.

1992년11월에는 규제 일정을 2000년에서 1996년으로 추가 단축하고 수염화불화탄소(Hydrochlorofluorocarbons) 등 규제물질을 추가하는 코펜하겐 개정의정서가 채택되어 1994년6

월14일 발효하도록 돼있다.

이 의정서는 CFC 등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량을 1994년1월1일 75%를 삭감하고, 1996년1월1일부터는 전면 금지하는 규제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 적용을 받는 국가는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연간 0.3kg의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비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로서 CFC 및 Halon 등 규제물질의 비가입국에 대한 수출 및 수입을 금지하고, 냉장고, 에어컨 등 규제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1992년5월27일 이후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반도체, 정밀기기 등 규제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되었으나 함유하고 있지는 않은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검토하였으나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지은 상태이다.

(2)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1992년6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3월 21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12월 47번째 국가로 가입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모든 가입국의 공동 의무로서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측정, 통계자료 작성, 기후변화 완화조

<특집 I> : 「그린라운드」와 原子力

치 등 협약이행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이행,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조치의 개발 및 적용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선진국들(OECD 및 동구권 국가)의 특별 의무사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국가정책 채택 및 구체적 조치 시행, 협약 이행을 위한對개도국재정 및 기술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의무사항 등 협약 이행 관련 정보를 상술한 '국가보고서'를 가입국 회의에 선진국은 협약 가입후 6개월내, 개도국은 협약 가입후 3년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OECD 및 동구권 국가로 특별 의무사항 이행국이 한정되어 있으나 신규 OECD 회원국을 고려하여 1998년12월31일까지 이 대상국을 재검토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향후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이 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3) 바젤협약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인류 건강에 대한 위협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89년3월 채택되어 1992년5월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2월28일 가입하였다.

이 협약의 주된 목적은 주로 선진국

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개도국에서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 협약의 적용대상은 폭발성, 인화성, 중독성 등을 갖는 폐기물 47종으로, 대표적인 대상물질은 의료폐기물, 산화폐기물, 폴리염화페닐류, 염료 및 캐릭터폐기물, 접착제폐기물, 중금속 등이다.

이 협약에서는 가입국과 비가입국 간에 규제대상 폐기물의 교역을 금지하고, 가입국간에도 ① 수출국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② 당해 폐기물의 수입국에서 재생이용 또는 재생산업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③ 가입국이 결정한 여타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역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생물다양성협약

이 협약은 생물 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생명공학기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992년6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1993년12월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생물자원 보유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적정수준으로 개발을 규제하며 생물자원에 기초한 유전공학 기술개발 성과를 공정히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I. 무역과 환경의 연계

무역과 환경이 연계될 수 있는 근거는 ① 각국의 상이한 규제기준의 차이에 따른 국제 경쟁력 문제, ② 환경에 유해한 상품의 교역에 대한 제재, ③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조치의 사용, ④ 무역 자유화에 따른 환경 파급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무역과 환경의 연계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은 1970년대 초부터이다. 이 당시는 무역경쟁력의 차원에서 환경규제의 기준 차이가 짐승적인 토의 및 연구의 대상이 되었었다.

주요 관심사는 한 국가가 엄격한 환경규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공해방지비용으로 인하여 그 국가의 제품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산업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은 그 산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外部非經濟(negative externality)를 놓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나 벌금의 부과, 환경기준의 설정 등 규제수단을 시행하여 오염 유발업소의 비용함수에 내부화시켜야만 시장적 효용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규제 수단이 국제적으로 적용될 경우 각국의 규제 형태와 정도에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내

「그린라운드」의 배경 및 전망

부화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생산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비교우위에 영향을 받게된다.

따라서 엄격한 환경규제를 운용하는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환경규제 수준의 차이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만큼 관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선진국들이 환경 관련 무역규제 조치시 자주 이용되었다. 그러나 환경규제 기준의 차이가 과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무역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재등장한 것은 1992년6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극대화된 지구환경 보호 움직임의 영향이 컸다.

1970년대에는 무역 측면에서의 관점이 중시되었던 반면, 최근은 지구환경 보호가 주안점이 되는 듯한 경향으로 광범위한 논의와 매우 세밀한 대책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서 예전에는 물품 중심으로 규제하던 것이 최근에는 PPMs(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로 불리는 물품 생산과정에 대한 규제로 그 대상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규제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지구환경 보호의 긴급성에서 찾고 있다.

한마디로 환경에 관한 한 하나의 세계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리가 대두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환경과 무역의 연계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 및 유럽의 경제통합 움직임 등의 영향도 있지만 최근 UR 타결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환경분야에 대한 세계선진국의 국민들 특히 민간환경단체들의 강한 요구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III.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수단

1988년 OECD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환경규제 수단은 15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기능별로 직접규제수단(regulatory instrument)과 경제적수단(economic instrument)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환경보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무역규제는 GATT의 규정이나 국제환경협약, 또는 다자간협상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환경규제 대상은 크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과 생산공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규제수단으로서 특정 품목의 수출입규제, 기술규제, 수량제한 및 상계관세 등이 있다.

1.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입 규제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물질이나 그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대부분이 국제환경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거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 등 41종의 특정물질의 사용량이 제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 에어컨 등 이들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교역이 규제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생산공정에서 이들 물질이 사용된 제품도 규제될 예정이다.

바젤협약에 의거 폭발성, 인화성, 중독성 등 13가지 특성(特性)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 47종에 대해서는 국경간 이동이 규제되고 있으며,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을 통해 규제대상 동식물의 수출입이 멸종(滅種)위기 정도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2. 수량 제한

GATT 11조에는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할당, 수출입의 허가, 또는 기타의 조치에 의하는 것에 불문하고, 관세·과징금 이외의 금지·제한을 신설하거나 유지하면 안된다.”라는 「량제한(量制限)의 금지(禁止)」를 명기하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하 무역조치로서의

〈특집 I〉 : 「그린라운드」와 原子力

표 1 : 환경규제수단의 기능별 분류

환경 규제 수단	직접규제 수단	특정상품 및 성분의 사용 규제 및 금지, 특정공정 의 규제 및 금지, 강제규 범(배출기준, 표준, 기술 규정 등), 자원사용량 할 당, 정보공개의무, 사전통 보승인절차
환경 규제 수단	경제적 수단	배출부과금, 제품부과금, 행정부과금, 예치금제도, 재정유인제도, 보조금, 상 계관세, 배출권거래제도, 환경마크제도

수량 제한은 모두 GATT 20조의 일 반적인 예외조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 치, ②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 치, ③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에 제출된 기준에 합치되는 정부 간 상품협정 또는 체약국단에 직접 제 출되어 부인되지 아니한 정부간 상품 협정에 의한 의무에 따라 취한 조치 등이다.

여러 국가가 이에 근거하여 농산물 과 화학물질 등에 수량제한조치를 발 동한 바 있다.

3. 기술규제

기술규제는 東京라운드에서 채택되고 UR에서 보강된 기술장벽협정(TBT :

The Agreemen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근거하고 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 to Trade)이란 물 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 법에 관한 기술규정과 표준규격, 그리고 이들에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절 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 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국가의 각종 표준(standards) 제도 및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인증(certification), 및 검 사(testing)제도를 의도적으로 까다롭 게 운영할 경우 수입을 규제하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UR 기술장벽협정은 內 國民 대우 및 최혜국대우 원칙의 보 장, 공산품과 농산물 등 모든 물품의 포함 표준화제도의 무역장벽화 금지,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정의에 제품 뿐만 아니라 관련 공정 및 생산 방식 포함, 불필요한 강제규정의 폐지, 국제표준 규격의 채택 강화, 표준규격 관련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에서는 표준화제도 의 무역장벽화 금지와 관련하여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① 국가 안보상의 요구, ② 기 만적(欺瞞的) 관행의 방지, ③ 인체 건강 또는 안전, ④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전에 관한 경우에는 합법 적으로 기술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 은 환경보전을 이유로 기술장벽을 벌 써부터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이 시급한 실정이다.

4. 상계관세

상계관세란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 가 그렇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환경규제 수준의 격차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 해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현재 환경기준이 엄격 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에 대하여 환경기준 격차에 따른 생 산비의 차이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오염방지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린라운드」 배경 및 전망

IV. 국제적 논의 동향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은 이제까지 상호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두 정책을 조정·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GATT/WTO, UN, OECD, 국제표준기구(ISO)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GATT/ WTO

GATT는 개별국가 또는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기존 국제 무역질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복잡성, 입장 및 관점의 다양성 UR 협상 타결의 긴급성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환경과 무역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GATT 내에서는 ① GATT 이사회, ②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작업반(환경무역작업반), ③ 국내금지제품과 기타 유해물질의 수출에 관한 작업반(유해물질수출작업반), ④ GATT 사무국 등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GATT의 무역규제조치는 불가피한 겨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환경정책의 대안을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GATT는 곧 새로이 출범하

는 WTO 체제로 전환될 것이므로 WTO 산하의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어떠한 입장을 견지할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OECD

OECD는 환경과 무역문제에 관하여 가장 체계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OECD는 이미 1972년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 측면과 관련한 지침의 원칙'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4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①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 환경보호에 필요한 규정이 설정되었을 경우 이를 이행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함.

② 조화원칙(Harmonization Principle) : 각국 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간 환경정책 및 규정의 조화를 위해 노력함.

③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Principle) : 각국은 환경 조치 시행시 GATT의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을 준수함.

④ 보상적 수입부과금 및 수출환급금지원칙(Compensating Import Levies and Export Rebates Principle) : 각국은 환경정책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 부과금이나 수출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1991년1월 무역위원회와 환경정책 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합동작업반이 구성되어 무역과 환경간의 조화를 증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작성하여 1993년6월 OECD 각료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현재 분야별로 세부지침을 작성하는 중에 있다.

1993년 현재 이 작업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침은 ① 정책요강 서설, ② 국내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 ③ 무역정책과 무역협정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를 위한 지침, ④ 국제환경협정에 있어서 무역조치를 활용하기 위한 지침, ⑤ 환경목적을 위한 일방적 무역조치의 사용에 관한 지침, ⑥ 환경정책의 조화를 통하여 무역 및 환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침 등 크게 6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3. UN

UN 내에서의 환경과 무역에 관한 논의는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리우선언' 원칙 12 및 '의제 21(Agenda 21)'의 제2장에 반영되었다.

'리우宣言' 원칙 12에는 "각국은 환경 악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과 지속가능

〈특집 I〉 : 「그린라운드」와 原子力

한 개발을 도모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를 증진시키도록 협력하여야 하고, 환경적 목적을 위한 무역 정책수단은 국제무역에 대하여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위장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아니되고, 수입국의 관할지역 밖의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는 회피되어야하며, 국경을 초월하거나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환경적 조치는 가능한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의제 21’의 제2장을 통해 초 국가적, 지구적 환경문제를 규제하는 환경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무역간의 조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원칙으로 무차별원칙, 최소규제원칙 등이 설정되어 있다.

다만 특정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역규제조치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일방적 규제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4. ISO

ISO에서는 UN 환경개발회의의 요청에 따라 1966년부터 1999년까지 6개 분야에 걸쳐 환경적 합성 인증규격(ISO 18000 시리즈)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ISO는 오염물질함량을 단순 반복적으로 측정 분석하던 기존의 환경관리 개념을 조직체 내의 모든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의 체계적인 환경활동과 능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환경영향 국제규격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하에 설치된 기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영향 표준화 대상의 각 주제별로 설치된 부회에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① 제1부회 : 조직체가 환경영향체 제를 도입 채택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규정한 환경영향체제에 대한 규격

② 제2부회 : 조직체의 환경영향체 제와 산업활동에 대한 각종 감사절차와 감사자의 자격기준, 감사기관의 감사계획 설정에 대한 규격

③ 제3부회 :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환경표시절차와 방법 및 표시내용의 확인방법에 대한 환경라벨링 규격

④ 제4부회 : 조직체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또는 환경목표 이행의 정도를 오염인자별로 환경지표를 설정하고 정량적 비교 분석하는 환경성능 분석

⑤ 제5부회 : 상품의 제조에서 폐기 예 이르기까지의 환경적 관련인자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라이프사이클 분석

⑥ 제6부회 : 환경에 대한 각종 용어의 정의와 수식의 규정에 대한 기본 규격

V. GR의 전개 전망

UR 협상에서는 환경과 무역문제가 독립된 주제로 다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UR 조문에는 환경 관련 조항이 많이 추가되었다. UR 최종협정문은 그 전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WTO 내에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할 것에 합의하였다.

기술장벽협정문은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나 환경관련 내용이 보다 투명하게 되었으며, 동식물위생검역규정은 동식물 및 인간의 건강과 보호를 위한 조치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조금의 경우 20%까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하여 UR이 이룬 공적중 가장 큰 것은 개도국 수출품의 선진국내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개도국의 빈곤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1994년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UR 각료회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하에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각료결정이 채택되었다.

「그린라운드」 배경 및 전망

GR이 언제 가시화 되는지는 분명 하지 않으나 1995년 설립될 예정인 WTO에 의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유무역과 환경보호간의 관계정립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환경관련 규제조치의 투명성 및 명료성 보장, 제품의 생산 방식 및 공정에 대한 규제기준, 환경보조금, 환경마크, 포장규제 등의 시행 기준, 분쟁해결 절차의 보완, 환경비용 차이의 상계관세 부과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과 무역문제에 대한 향후 논의는 선진국은 환경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경쟁력을 보완하고 자국 환경보호를 위해 일방적 조치를 병행해 가면서 多者規範化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도국들도 환경보호 명분을 거부할 수 없는 데다가 장기간의 협상기간 및 협상과정에서의 예외 확보 등을 위해 다자규범화 노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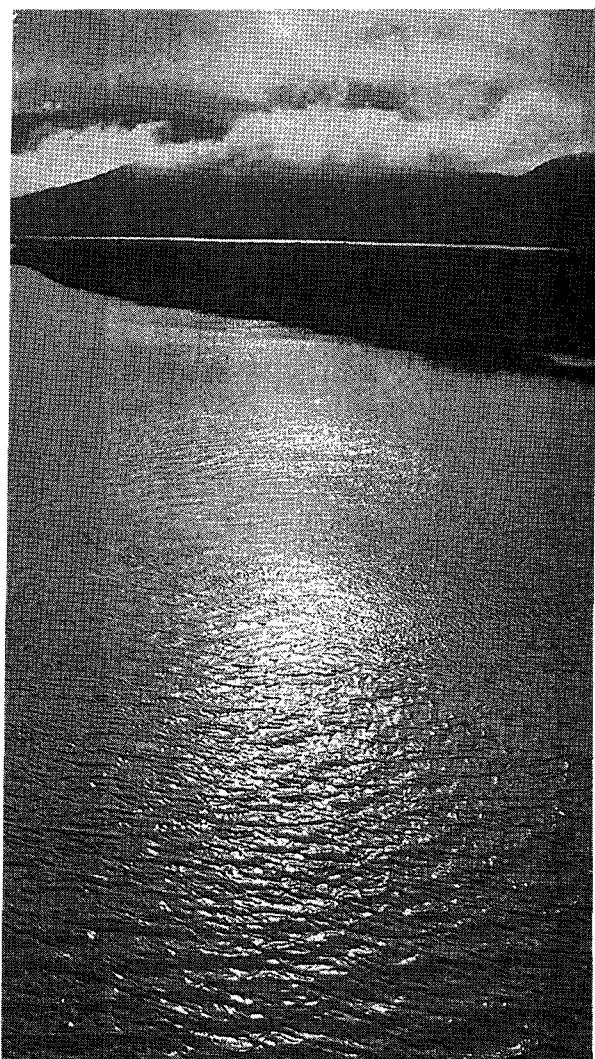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 조치는 원가 상승 또는 원자재 적기 수급 차질 등 수출품의 경쟁력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내산업의 구조 개편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환경 관련 국제무역규범은 무역의 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점이 많기도 하지만 다자간 규범으로 만들어질 경우 우리보다 낮은 환경기준을 갖고 있는 국가와 비교하여 오히려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으므로 이러한 대세를 국내산업 및 무역정책에 조기에 수용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

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 방어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化石에너지와 資源의 사용에는 항상 大氣와 水質을 오염시키거나 酸性비 등을 내리게 하여 이러한 맑은 水資源도 못쓰게 만든다. 그러한 면에서도 原子力은 장점을 지닌다.〉